

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3조(설립) ①~② (생략) ③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사장의, 자체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. (신설)</p>	<p>제3조(설립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인승인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설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한다. 1. 법인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 행정부서 및 정규직 직원 존치 필요성 3. 독립된 건물 보유 가능성 4. 기타 법인 이사장이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④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사장의, 자체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.</p>	<p>* 3항 신설 (법인승인연구소 설립조건 추가) * 기존 3항은 4항으로 개정</p>
<p>제4조(조직) 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: 2016.9.7.) 제5조(주요직제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통할한다. ② (생략) ③ 연구소에는 부(실/팀)장 등을 둘 수 있으며, 부(실/팀)장 등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조직) 독립재산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제5조(주요직제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통할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독립재산연구소에는 부(실/팀)장 등을 둘 수 있으며, 부(실/팀)장 등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*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연구소 범위 축소 * 오타 수정</p>